안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

의 안 번 호	2352

제안년월일 : 2012. 12. 11.
제 안 자 : 안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

1. 주 문

○ 안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당초 2012년 1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에서 **2013년 2월 28일까지로 연장**한다.

2. 제안이유

○ 2012.11.1일부터 2개월간 한시적으로 구성된 윤리특별위원회에 의장으로부터 2건의 안건이 회부되어 운영 중에 있으나,
제198회 안산시의회(제2차 정례회)가 23일(11. 28 ~ 12. 20)간의 일정으로 개회되어 2013년도 안산시 세입·세출예산안 등 중요한 안건이 심의 중으로 동일한 기간 내에 특별위원회 활동이 지난한 실정임.

○ 이에 윤리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12. 12. 31일자로 종료되는 활동기간을 **2013. 2. 28일까지 연장**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임.

3. 참고사항

○ 지방자치법

제57조(윤리특별위원회)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○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

제7조(특별위원회) ① 의회는 수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⑥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. 다만,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